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53	17	79.7.19	총재 신 병 헌

의 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개정"을  
별안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외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

제외취지

최근 현금통화비율 상승추세와 아울러 금융  
기관 보유현금수준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예금지급준비예금에 대한 현금보유 인허가를  
인상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자금유용의 효율  
화를 기하고자 본건 권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

참고사항 1. 제의관계 법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할  
을 정하며, 필요하다그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  
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그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30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  
저예금 지급준비금의 결정.

2.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  
까지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하는 것의  
허용.

2. 첨부물

가. 은행별 인허한금 및 시저금보유추이

나. 현금통화비율 추이

다. 최근의 은행예금 보유비율 분포

라. 현금보유 인허한 변경추이

마. 외지외국인예금 거동.

#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	개 정 (안)
<p>제1조 ~ 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제3조 (예금의 종류)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 예금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정기예금, 국민저축조항예금, 전기적예금, 등지예금, 공인예금, 생활예금, 납세저축스킴예금, 복리증기가계예금, 자유적립예금, 상호주점야적예금, 저축예금</p> <p>②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예금은 저축성 예금으로 분류한다</p>	<p>제1조 ~ 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제3조 (예금의 종류)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 예금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지예금, 특별정기가계예금, 자유적립예금, 저축예금</p> <p>②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예금은 저축성 예금으로 분류한다</p>
<p>제4조</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제5조 (현금보유인허율) 금융기관은 예금지급준비금 중 10%</p>	<p>제4조</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제5조 (현금보유인허율) 금융기관은 예금지급준비금 중 15%</p>

권	개 정 (가)
<p>까지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p> <p>제6조</p> <p>(이하생략)</p> <p>(신 설)</p>	<p>까지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p> <p>제6조</p> <p>(이하생략)</p> <p>부 칙</p> <p>1 이 개정은 1979 7 23 (7월 23일 요지순 직립시)부터 시행한다</p> <p>2 이 개정 시행일전에 이미 폐지된 국민저축조합예금, 농어민예금, 새생활예금, 남세저축조합예금, 공동주 청약 저축예금은 예금인출시까지 종전개정을 적용한다</p>